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3 발의연월일: 2024. 6. 13.

발 의 자:김영호·박희승·이용선

이수진 • 이광희 • 민형배

박성준 · 임호선 · 김문수

강준현 · 서미화 · 박홍근

서영교 • 이훈기 • 김영배

김현정 · 문대림 · 문정복

이해식 · 강경숙 의원

(20일)

제안이유

학교는 미래세대가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키우며 자발성과 책임 의식을 갖추는 사회화의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설립 시 교사, 체육장 등 학교시설과 학급 규모, 통학거리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여건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기존의 학교 기준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폐교 또는 학교가 통폐합되는 지역에서는 학생 의 통학거리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반면, 대단지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의 경우 기존의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학 교 신설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특히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의 설립·운영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근거와, 명칭, 유형 및 종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교육과정, 학생자치활동,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급식 등 도 시형캠퍼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 지).

법률 제 호

도시형캠퍼스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본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도시형캠퍼스 를 운영·관리하는 공립학교를 말한다.
- 2. "도시형캠퍼스"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의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분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립학교의 분교 또는 분교장(본교와 분리된학교시설에서 본교의 장이 시행하는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본교에서 행하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 학교에 도시형캠퍼스를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

한다.

제2장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 제5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① 교육감은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 학급 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학생배치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및 체육장 시설 기준은 「초·중등교육법」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 조례로 정할수 있다.
- 제6조(명칭) ① 도시형캠퍼스는 본교의 명칭을 앞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명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유형 및 종류) ①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편형 도시형캠퍼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화된 기존의 학교를 개편한 도시형캠퍼스
 - 2. 신설형 도시형캠퍼스: 특정지역 학령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의 과밀화 해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의 수요 충족, 원거리 통학

해소 및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신설하는 도시형캠퍼스

3. 공공시설 활용형 도시형캠퍼스: 기존의 공공시설 일부 또는 전체를 학교시설로 리모델링 하거나 증축하여 구축하는 도시형캠퍼스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의 유형 및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도시형캠퍼스의 운영

- 제8조(교육과정)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 정으로 한다.
 - ②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립학교의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학생자치활동) 도시형캠퍼스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생자치조직의 통합 ·분리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직원) ① 도시형캠퍼스의 장은 본교의 장으로 하며, 도시형 캠퍼스의 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본교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을 둔다.
 -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 있으며,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
-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① 도시형캠퍼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도시형캠퍼스의 학부모 또는 교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본교의 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초·중 등교육법」에 따른다.
- 제12조(학교급식) ① 본교의 장은 도시형캠퍼스에서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 및 인력을 별도로 관리·운영하여야한다. 다만, 본교와 공동급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에서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학교운영의 통합·분리) ① 본교와 도시형캠퍼스의 학교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은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와 분리하여 시설·설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 설치·운영 중인 분교 또는 분교장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캠퍼스로 본다.